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524113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재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3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8. 10.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1. 16.까지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7. 체

결된 대물변제계약을 80,742,4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742,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 이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부담하게 될 계약이행보증금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70,538,100원, 보험기간 2016. 8. 22. ~ 2018. 12. 31.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4조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피고 B과 G(경기)/방수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피고 B에 2018. 3. 20. 위 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9. 18. 소외 회사에 보험금으로 70,538,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2017. 9. 13. I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2017. 10. 27.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보고 위 신탁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채무 534,000,000원 및 이자 등을 피고 D가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말소시키고 나머지 가액을 101,827,095원으로 보아 위 돈을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채무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11. 8. 접수 제2422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15,000,000원 정도였고,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피고 C의 채무로는 위 부동산의 신탁등기 및 대출에 따른 H에 대한 대출금 534,000,000원, J카드에 대한 채무 1,944,000원, K카드에 대한 채무 3,60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3,68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7,970,000원, L은행에 대한 채무 316,000원, 피고 D에 대한 채무 260,058,848원(= 126,206,000원 + 133,852,848원) 등 합계 871,568,848원이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일 무렵 가액은 940,000,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M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70,53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8. 10.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 16.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M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5조 제1항1)에 따라 2018. 3. 20. 발생하여 비록 이 사건 대물변

1)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회사에 해당채무액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 없이 본인과 보증인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이하

제계약 체결일인 2017. 10. 27.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피고 C은 이미 위 1.의 라.항과 같이 합계 871,568,84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후 원고가 피고 B 및 피고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C의 무자력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일인 2017. 10. 27. 기준 피고 C의 적극재산 가액은 615,000,000원 상당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871,568,848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일 당시 피고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사전구상권'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
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피고 D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대물변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
다. 그리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 C은 위 대물변제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
익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한편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
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
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
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
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3) 갑 제10, 11호증, 을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

후 5일 후인 2017. 11. 1. 피고 B에 공정관리 미흡, 거래처 대금 미불 등을 이유로 공사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던 점, ② 피고 B은 2017. 11. 30. 17,171,000원, 2017. 11. 30. 24,39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방수공사계약이 해지된 이후 기시공 부분에 대한 정산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이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계속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D는 을 제9호증으로 발주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일 이후에 피고 D에 발주한 내용들로서, 피고 B의 공사계속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에 피고 B, C이 사업을 위하여 피고 D로부터 자재를 추가로 공급받았다거나,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등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신규자금이나 자재의 유입 없이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피고 B, 피고 C의 사업계속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 D의 선의 항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는 피고 B이 2017. 5.경부터 자재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어, 피고 C 으로부터 2017. 6. 1., 2017. 8. 21. 두 차례에 걸쳐 자재대금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던 점, ② 피고 D는 피고 C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발견하였고, 이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D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결국 채권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수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중간과정을 거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참조).

담보신탁에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가 신탁자인 피고 C을 대위

하여 담보신탁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 D가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대물변제계약의 일부 취소 및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판결,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940,000,000원)에서 선순위 신탁등기의 피담보채무액(534,000,000

원)을 공제한 잔액 약 406,000,000원 중 원고의 채권액인 80,742,442원²⁾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원고에게 80,742,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2) [01] $70,538,100 \times [30/365, (=2018.09.19\text{부터 } 2018.10.18\text{까지})] \times 6\% = 347,859$
[02] $70,538,100 \times [455/365, (=2018.10.19\text{부터 } 2020.01.16\text{까지})] \times 9\% = 7,913,795$
[03] $70,538,100 \times [84/366, (=2020.01.17\text{부터 } 2020.04.09\text{까지})] \times 12\% = 1,942,688$
이자 합계 10,204,342원, 원리금 합계 80,742,442원

별지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외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5층 호 84.71㎡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 17794.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7794.6분의 56.04